[서식 예] 전부금청구의 소(집행권원 : 대여금 확정판결)



소 장

원 고 ○○○ (주민등록번호)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전화·휴대폰번호: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◇◇◇ (주민등록번호)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전화·휴대폰번호: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전부금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- 1.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,521,231원 및 이에 대한 20〇〇. 〇〇. 〇〇.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-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- 3.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- 1. 원고는 소외 ◆◆◆에 대하여 ○○지방법원 20○○가단○○○호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같은 법원으로부터 "소외 ◆◆◆는 원고에게 금 1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20○○. ○. ○.부터 20○○. ○. ○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"는 판결을 받았는데, 소외 ◆◆◆는 지금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.
- 2. 그런데 소외 ◈◆◆는 피고에게 20○○. ○. ○. 금 20,000,000원을 빌려주고 매월 금 500,000원의 이자를 받아 오고 있습니다.
- 3. 그러므로 원고는 위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으로써, 소외 ◈◈◈가 피고로부터

4.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전부금 10,521,231원 및 이에 대한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〇〇. 〇〇. 〇〇.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 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 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5%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고 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.

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

1. 갑 제2호증 위 결정 송달증명 및 확정증명

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 각 1통

1. 소장부본 1통

1. 송달료납부서 1통

2000. O. O. 어명 또는 날인)

○○지방법원 ○○지원 귀중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소멸시효	○○년(□ 소멸시효일람표 www
제출부수	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		
비 용	·인지액: ○○○원(☞산정방법) ※ 아래(2)참조 ·송달료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		
불복절차	· 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		
및 기 간	·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		
기 타	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는데,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・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고,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짐(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, 제5항, 제7항). ·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게 되고 다만,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(민사집행법 제231조). ·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 		

※ (1) 관 할

- 1. 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,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,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,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.
- 2.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- 3.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(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, 그 밖의 채무 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: 민법 제467 조 제1항, 제2항)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.

※ (2) 인 지

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. 다만,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·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,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

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함께 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를 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(민사소송 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)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이행의 소